

**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(예비입주자)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4.11.30.(토) ~ 2024.12.06.(금) 7일간
제출 장소	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견본주택(파주시 다울동 1041-5번지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1.07)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동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○		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”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“상세”로 발급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→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 •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→ 군복무기간(25년 이상)을 명시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※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	세대원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
신혼 부부 특별 공급	○		신혼부부 자격요건확인서	본인	[혼인신고일, 자녀수,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(견본주택 비치)]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•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표시로 발급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·비속의 소득입증서류) ※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청약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※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증빙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•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			피부양 직계비속	•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/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(출산예정일, 질병코드번호, 담당의사명,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
	○		부동산 소유현황 (추첨제당첨자)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해당자	• 견본주택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 ②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부적격 소명자료		○	무주택 소명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 및 '분양권 등'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-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 함.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 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름.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 ※ 이례 서류와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: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

구분	자산증 제출서류		발급처
"부동산소유현황"이 있는 경우	공통(필수)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	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	추가	주택을 소유한 경우	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]
		토지를 소유한 경우	개별공시지가확인서[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
	해당자	• 집합건물: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[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(서울시: 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조회)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(서울시 외: '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) • 집합건물 외 건물: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,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	① 서울시이택스 (etax.seoul.go.kr), 위택스(www.wetax.go.kr) ② 주민센터
	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"부동산소유현황"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*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주민센터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해당자격	소득증빙 제출서류		발급처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("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"으로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	- 해당직장 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근로자	금년도 신규취업자/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/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(건강보험증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- 해당직장
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	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자영업자	신규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※ 표준(기준)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(국민연금 미가입자)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(매출액·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- 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(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	- 등기소 - 세무서(또는 홈택스) - 해당직장
프리랜서(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등)	계속적인 프리랜서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	- 해당직장 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	신규 프리랜서	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	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비정규직, 일용직근로자	계속적인 근로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	- 해당직장
	신규 근로자	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	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기타	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※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	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	농업인	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	
무직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2023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: 2023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		- 주택전시관 비치 - 세무서(또는 홈택스)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